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8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안 별표 1)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9. 10.

다. 회 부 일 : 2024.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에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 별표 1 <신설>	○ 별표 1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현행법 제4조¹⁾에 따라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회계명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세 입	◦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100분의 50 ◦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국고(國庫)에 귀속되는 범칙금의 100분의 50 ◦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제6조에 따른 차입금 ◦ 그 밖의 수입금 등
세 출	◦ 「도로교통법」 제3조, 제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경비 ◦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에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등 관리 ◦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관 리	◦ 경찰청장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라 함)은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도로교통사고²⁾로 인한 사

2)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자동차가 사람을 치거나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는 따위의 사고

회적 비용은 26조 2,833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2%이자 2022년 국가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신호기·신호등·안전표지) 등의 체계적인 설치·관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적시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의 수입을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현행법 제14조³⁾에서는

-
- 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 ②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⁴⁾

이에 따라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가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장비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있으므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적시성 있는 교통안전시설 등의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현재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의 설치·관리는 「도로교통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⁵⁾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다만,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국회에서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러한 타당성 심사 절차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는 있음.

5)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起點) 및 종점(終點)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3의2. 방호울타리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와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등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청이 특별회계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경찰사무의 이원화 체계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통안전시설 관리 관련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소관	2024년 예산	회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⁶⁾	국토부	10,783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안전·소통확보	경찰청	313,500 ⁷⁾	일반회계

자료: 기획재정부

다음으로 ‘특정 세입·세출 연계 등으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이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100분의 50’, ‘「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국고(國庫)에 귀속되는 범칙금의 100분의 50’ 등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6) 「도로법」에 따라 일반국도 시설관리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 중이며, 지방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음.

7) 교통안전활동 42,894, 교통과학장비관리 122,277, 도로교통공단출연 145,005,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 3,310

위한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징수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라는 특정 세입으로 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려는 것인데, 이는 특정 세출로 볼 수 있으므로 특정 세입·세출 간 연계로 인한 별도의 회계처리 필요성이 인정됨.

<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납부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과태료	부과	1,759,607	2,122,089	2,293,491
	납부	860,688	1,141,266	1,228,436
범칙금	부과	82,181	81,214	76,024
	납부	82,181	81,214	76,024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로,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회계를 두고 있었으나, 현재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현재도 일반회계 등으로 지원 중에 있어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실익이 부족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등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결과물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안전이 필요한 상황을 유발한 개인·단체에 부과하는 별도의 세입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교통안전시설 및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시설·장비의 설치·관리는 「도로교통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며,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회계 간 칸막이를 축소하는 특별회계의 신설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u><신 설></u>	별표 1 24.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

문의처
02)6788-5152